

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(허성무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32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22.

발 의 자 : 허성무 · 박선원 · 최혁진
이병진 · 이재관 · 윤준병
임미애 · 임오경 · 허종식
이강일 · 김종민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 활력과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 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.

그런데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, 중국발 공급과잉 등으로 인하여 석유 화학 · 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위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, 이러한 산업 위기는 지역경제 침체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을 위한 정부 역할 및 지원 강화가 필요함.

이에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에 대한 구조혁신 방안 수립 및 사업재편 권고, 지역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의 구성, 사업재편계획기간의 연장,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에 대한 특례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8조 및 제8조의2 등).

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)”을 “(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 및 심층조사의 수행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분석”을 “분석(이하 “기초조사”라 한다)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전단 중 “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자료의 수집·분석을”을 “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와 심층조사를”로, “단체의 장에게”를 “단체의 장, 관련 기업에게”로 한다.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선정하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종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8조의2를 제8조의3으로 하고,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제8조의3(종전의 제8조의2)제1항 중 “산업별 선도기업, 산업 관련 지원기관 및 단체 등으로 산업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”를 “산업별·지역별 선도기업, 산업·지역 관련 지원기관 및 단체 등으로 산업별·지역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”로 한다.

제8조의2(사업재편의 권고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

른 심층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에 대한 구조혁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.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조혁신 방안을 토대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사업재편을 권고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구조혁신 방안 마련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재편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제2항제4호의 사업재편계획기간은 5년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제24조의3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으로 선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이 제2항에 따른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계획서에 따라 승인기업을 지원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45조제1항제9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36조제1항제1호 중 “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수집·분석”을 “기초조사 및 심층조사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의2 중 “제8조의2”를 “제8조의3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업재편계획기간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 <u>제8조(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)</u> <u>수행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</u> 은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별·업 종별·기업규모별 동향 및 장 기·단기 전망 등에 필요한 실 태조사와 통계자료의 수집·<u>분</u> <u>석</u>을 실시할 수 있다. <<u>신 설</u>> <u>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</u> <u>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자</u> <u>료의 수집·분석을 위하여 필</u> <u>요한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 또</u> <u>는 경제단체 등 기업지원기관</u> <u>이나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</u>	개정안 <u>제8조(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</u> <u>및 심층조사의 수행) ① -----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분석(이하 “기초조사”라</u> <u>한다)------.</u> <u>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</u> <u>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를 활</u> <u>용하여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</u> <u>종을 선정하고, 대통령령으로</u> <u>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종에</u> <u>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할 수 있</u> <u>다.</u> <u>③ -----제1</u> <u>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</u> <u>와 심층조사를-----</u> ----- ----- ----- <u>단체의 장, 관련 기업에게-----</u>
---	--

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협조의
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
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
한다.

<신 설>

제8조의2(사업재편 협력체계 구축) ① 정부는 산업생태계의
선제적 혁신 및 신속한 재편을
촉진하기 위하여 주요 산업별
선도기업, 산업 관련 지원기관
및 단체 등으로 산업별 사업재

----. -----

-----.

제8조의2(사업재편의 권고) ① 산
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조제2
항에 따른 심층조사 결과를 활
용하여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
종에 대한 구조혁신 방안을 마
련할 수 있다.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
항에 따른 구조혁신 방안을 토
대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
업에게 사업재편을 권고할 수
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구조혁신 방
안 마련 및 제2항에 따른 사업
재편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
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조의3(사업재편 협력체계 구축) ① -----

-----산업별
· 지역별 선도기업, 산업·지역
관련 지원기관 및 단체 등으로

편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요
기업 발굴, 펀드 조성, 기술 및
인력지원 등 필요한 지원방안
을 마련할 수 있다.

② · ③ (생 략)

제9조(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)

① · ② (생 략)

③ 제2항제4호의 사업재편계획
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
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1.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
경우: 3년

2.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: 5
년

④ ~ ⑨ (생 략)

제24조의3(상생형 사업재편 지원
기업) ① (생 략)

<신 설>

② · ③ (생 략)

산업별 · 지역별 사업재편지원
협의회를 구성하여-----

-----.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)

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제2항제4호의 사업재편계획
기간은 5년을 넘지 아니하여야
한다.

④ ~ ⑨ (현행과 같음)

제24조의3(상생형 사업재편 지원
기업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에 따라 상생형 사업
재편 지원기업으로 선정을 받
으려는 기업은 상생형 사업재
편 지원계획서를 작성하여 산
업통상자원부장관에 제출하여
야 한다.

③ · ④ (현행 제2항 및 제3항
과 같음)

<u><신 설></u> ④ (생 략) 제36조(업무의 위탁) ①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 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,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1. 제8조에 따른 <u>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수집·분석</u> 1의2. <u>제8조의2</u>에 따른 사업재 편 수요기업 발굴 및 지원 업 무 2. ~ 6. (생 략) ② (생 략)	⑤ <u>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이 제2항에 따른 상생형 사업 재편 지원계획서에 따라 승인 기업을 지원하는 행위에 관하 여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」 제45조제1항제 9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</u> ⑥ (현행 제4항과 같음) 제36조(업무의 위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-----<u>기초조사 및 심층조사</u> 1의2. <u>제8조의3</u>----- ----- - 2. ~ 6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--	--